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3. 13.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상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천재지변, 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 삭제(제29조 후단)
  - 제29조(대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 라. 입법예고 : 2024. 1. 25. ~ 2. 14. (20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관리자가 천재지변, 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정비사례 (손해배상 관련)

구분	조례명	내용	개정
강원도	○○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손해배상) ② <u>경기장 안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u> <개정 2010. 12. 31., 2016. 11. 4.>	제10조(손해배상) ② 삭제 <개정 2018. 12. 28.>
광주광역시	○○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② <u>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u>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② 삭제 [전문개정 2019. 4. 8.]
경기도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공유료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u>이때 발생한 자동차의 손괴 및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제10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공유료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경기도	○○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③ <u>시장은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본조신설 2017. 1. 9.]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③ 삭제 <2018. 11. 5.> [본조신설 2017. 1. 9.]
서울특별시	○○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① <u>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u>	제12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삭제 <개정 2018. 12. 13.>
충청북도	○○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7조(면책)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1.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간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무료 운영시간에 발생한 사고 및 차량의 훼손 또는 도난 등	제7조 삭제 <2019. 5. 17.>
전라남도	○○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제12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1조에 따라 <u>대행법인 등이 견인, 보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형사상 또는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법인에게 귀속한다.</u> (개정 2010. 9. 13)	제12조(개정 2010. 9. 13) (삭제 2018. 12. 6.)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조문 내용》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대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받은 경우
4.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9조(대관의 취소 등)을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삭제)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0조(대관료) 박물관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에 따라 제29조(대관의 취소 등)의 개정 후에도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 2023. 5. 11.자로 개정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명을 입안 형식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함(제1조~제2조안)
- 시행규칙 개정 후에도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 대관이 취소될 경우, 그로 인하여 대관을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손해배상을 해야 함. 그러나 이에 따른 정확한 손해배상액 추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비용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강호진